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2. 6 선고 2021가단5065992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성

담당변호사 김윤선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변 론 종 결 2021. 11. 22.

판 결 선 고 2021. 12. 6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89. 6. 20. 접수 제3100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가. 피고 B, C에 대한 청구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나. 피고 D, E에 대한 청구 : 자백간주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 김진영

별지